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2년 5월 29일

CUOMO 주지사와 입법부 지도자들은 뉴욕커들을 원치 않는, 강요적인 텔레마케팅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했습니다.

Andrew M. Cuomo 주지사, Dean Skelos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, Sheldon Silver 주 의회 의장은 오늘 뉴욕커들을 강요적인 텔레마케팅 방식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법률을 통과시켰음을 발표했습니다.

이 법률은 뉴욕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텔레마케터들이 수취인의 명백한 승인 없이 고객들에게 전화 통화로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또한, 이 주지사의 법률은 미국 국무부에게 뉴욕주의 텔레마케팅 법을 위반하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뉴욕주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

“점점 더 많은 뉴욕커들이 텔레마케팅 회사들로부터 원치 않는 전화로 원치 않는, 불필요한 방해로 받고 있습니다,”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 법안은 텔레마케터들이 홍보 메시지 수신을 선택한 분들만을 목표로 하여, 뉴욕주 소비자들 및 전화 소유자들이 더 이상 마케팅 노력으로 시달리고 성가시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.”

현재 뉴욕주 외에서 허가 받은 텔레마케터들은 뉴욕주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벌금을 물면서 뉴욕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주지사의 제안으로 뉴욕주내 사업을 하는 모든 텔레마케터들은 국무부에 등록해야만 하며, 국무부는 주 법에 따르지 않는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이 텔레마케팅 법률의 위반으로 추가 벌금을 물거나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재 22 명의 텔레마케터만이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. 이와는 반대로, 인접한 주들에서는 해당 주 내로 전화를 하는 다른 주의 텔레마케터들의 등록을 필수로 하여 등록된 텔레마케터들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. 뉴저지에 557 명, 펜실베이니아에 213 명, 버몬트에 333 명의 텔레마케터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2000 년 뉴욕주는 원치 않는 남용된 텔레마케팅 전화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Do Not Call (전화 금지) 법률을 제정했습니다. 이 법으로 소비자들은 그들이 받는, 요청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의 수를 줄이기 위해 중앙 기록부에 그들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습니다. 뉴욕커들은 Do-Not-Call (전화 금지) 기록부에 1,300 만 개 이상의 전화

번호를 등록했습니다.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무부의 소비자 보호원은 약 5,000 건의 Do Not Call (전화 금지) 관련 항의 및 질문을 받아왔으며; 2012년 1사분기 동안에만 FTC는 뉴욕커들로부터 61,705 건의 Do Not Call (전화 금지) 관련 항의를 받았습니다. Do Not Call (전화 금지) 기록부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싶은 뉴욕커들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: <https://www.donotcall.gov/>

주 상원 다수당 대표 Dean G. Skelos는, “이 협약은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통제하도록 해 줍니다. 뉴욕커들이 텔레마케터의 리스트내 전화번호를 받지 않도록 선택하기 쉽게 하고, 뉴욕주의 'Do-Not-Call (전화 금지)' 기록부의 필요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텔레마케터들로부터의 요청하지 않은 전화로 방해를 받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 무수한 뉴욕주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주 의회 의장 Sheldon Silver는, “공격적인 텔레마케팅은 소비자의 불평을 사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. 저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커들을 달갑지 않은 간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함을 격찬합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Consumers Union 프로그램 담당자 Chuck Bell은, “오늘 Cuomo 주지사에 의해 소개된 법률은 뉴욕주 소비자들을 위한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. 저희들은 모두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을 경험해 왔습니다. 따라서, 이 법안은 뉴욕커들이 이 전화를 끝내게 하는 수단을 가시도록 보장해 줍니다. 저희들은 소비자들을 요청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뉴욕주를 선두에 서게 한 주지사를 격찬합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AARP 뉴욕주 국장 Joan Parrott-Fonseca는, “저희들은 뉴욕커들을, 특히 비양심적인 텔레마케터들에 의해 자주 표적이 되는 노인분들을 대표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. 더 강력한 보호는 저희 주내 소비자들이 이 판매를 위해 소비자를 괴롭히는 전화나 다른 미리 녹음된 마케팅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소비자 보호부장 Susan Grant는, “주 정부는 주 정부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저희들은 미리 녹음된 마케팅 메시지 및 기타 성가시게 하는 구매 권유 전화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뉴욕커들을 대신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이 법률은 입법화된 후 90일이 지나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